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12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12월 9일

3. 제안이유

- 도민의 소득증가에 따른 다양한 체육 재정수요 충족  
- 체육관, 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 인프라 조성
- 현재의 재정운용 틀로서는 체육 재정수요 충족에 한계  
- 별도의 재정확보, 긴요한 재정수요 선별 충족 필요

4. 주요골자

- 조성재원 : 일반회계 전출금(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% 이내)
- 조성규모 : 200억원
- 기금용도 : 체육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
- 기금운용 : 기금 총액의 30%범위에서 사용
- 유효기간 : 2019. 12. 31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을 검토한바
- 도민의 소득증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출되는 건강욕구 및 대규모 체육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
-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

■ 참고사항 : 시도별 기금조성 현황(조성/목표)

서울 480/500억원, 부산 387/500억원, 대구 266/380억원  
대전 104/100억원, 광주 114/100억원, 경기 401/500억원  
강원 82/100억원, 전남 83/ 80억원, 경북 157/200억원  
경남 108/100억원, 전북 51/100억원

※ 미조성 시도 : 인천, 울산, 충북, 충남, 제주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3조제2호 중 “전국체육대회”를 “전국대회”로 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원안	수정안
제3조(기금의 용도)(생략) 1. (생략) 2. <u>전국체육대회</u> 및 국제대회 개최·참가 지원사업 3. (생략) 4. (생략)	제3조(기금의 용도)(원안과 같음) 1. (원안과 같음) 2. <u>전국대회</u> 및 국제대회 개최·참가 지원사업 3. (원안과 같음) 4. (원안과 같음)